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제정 1960.8.12, 공포 1960.8.12]

| | | | | | |
|------|-------------------|-------|-------------------|-------|---------------------|
| 제정 | 1960·8·12 <제정> | 10차개정 | 2004·4·12 <일부개정> | 20차개정 | 2016·2·2 <일부개정> |
| 1차개정 | 1974·12·9 <일부개정> | 11차개정 | 2009·3·31 <일부개정> | 21차개정 | 2017·1·10 <일부개정> |
| 2차개정 | 1985·10·18 <전부개정> | 12차개정 | 2011·10·12 <일부개정> | 22차개정 | 2017·3·13 <일부개정> |
| 3차개정 | 1995·4·6 <일부개정> | 13차개정 | 2011·11·3 <일부개정> | 23차개정 | 2017. 12. 21 <일부개정> |
| 4차개정 | 1996·3·27 <일부개정> | 14차개정 | 2012·1·5 <일부개정> | 24차개정 | 2018. 12. 05 <일부개정> |
| 5차개정 | 1997·4·15 <일부개정> | 15차개정 | 2013·4·15 <일부개정> | 25차개정 | 2019. 09. 09 <일부개정> |
| 6차개정 | 1998·9·24 <전부개정> | 16차개정 | 2013·12·13 <일부개정> | 26차개정 | 2020. 09. 27 <일부개정> |
| 7차개정 | 1999·4·12 <일부개정> | 17차개정 | 2014·11·24 <전부개정> | 27차개정 | 2021. 03. 23 <일부개정> |
| 8차개정 | 2000·10·30 <일부개정> | 18차개정 | 2015·3·16 <일부개정> | 28차개정 | 2021. 08. 30 <일부개정> |
| 9차개정 | 2003·4·2 <일부개정> | 19차개정 | 2015·11·23 <일부개정> | | |

| | |
|-------------------|----|
| 전문 | 1 |
| 제1장 총칙 | 1 |
| 제2장 의사결정기구 | |
| 제1절 통칙 | 4 |
| 제2절 학생총회 | 6 |
| 제3절 학생총투표 | 7 |
|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9 |
|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 14 |
| 제6절 공청회 | 18 |
| 제3장 총학생회장단 | 20 |
| 제4장 집행기구 | |
| 제1절 중앙집행위원회 | 22 |
| 제2절 비상대책위원회 | 23 |
| 제3절 특별기구 | 25 |
| 제5장 독립기구 | 29 |
| 제6장 산하기구 | |
| 제1절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 30 |
| 제2절 학부·과 학생회 | 32 |
| 제3절 동아리연합회 | 34 |
| 제7장 학생자치언론 | 36 |
| 제8장 재정 | |
| 제1절 통칙 | 37 |
| 제2절 자산 | 38 |
| 제3절 회계 | 39 |
| 제4절 재정배분 | 41 |

| | |
|--------------------|----|
| 제9장 선거 | 41 |
| 제10장 대표자의 윤리 | 42 |
| 제11장 회칙·세칙·규칙 | |
| 제1절 회칙 제·개정 | 44 |
| 제2절 세칙·규칙 | 45 |
| 제3절 해석·규정집 | 46 |
| 부 칙 | 47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외대인은 본교 설립 이래 4·19혁명과 학원의 자율성을 부정했던 학도호국단의 해체 그리고 전횡과 비리를 종식시키고자 1998년 10월 29일 제2건학을 선언하는 등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고 대학의 자유와 존재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항해왔다. 이는 우리 외대인 스스로의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하여 외대인을 위한 본연의 총학생회를 건설 해온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외대인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진리탐구와 세계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실천적 지성인의 양성이 우리의 영원한 사명임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총학생회 운영을 통해 안으로는 학문·사회·문화·정치·경제의 전 영역에 있어서 모든 외대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밖으로는 세계의 중심에 한국외국어 대학교를 굳게 세움으로써 세계평화를 향한 창조적 진리를 실현할 것을 다짐하면서 1960년 8월 12일에 제정되고 28차에 걸쳐 개정된 총학생회칙을 이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本會)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구성원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구성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바탕으로 학우들의 생활·학문·의사표출의 요구를 구현하고 회원 상호간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여 학원자주화와 본교의 평화를 위한 창조적 진리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

제4조(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에 소속된 자로 한다.
- ② 졸업·자퇴·퇴학·편입 등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의한 행위로 인한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교류회원으로 구분한다.
- ④ 정회원은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 정회원이 된다. 단, 학기 중 휴학을 한 자는 그 즉시 정회원 자격을 잃는다.
 1. 1학기 재학생: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학기 재학생: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⑤ 준회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휴학생·졸업유예생·정학 미만의 징계를 받은 자로 규정하며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제반 사항의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다. 단, 제5조에 따른 행위로 정학 미만의 징계를 받은 자는 중 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기간에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⑥ 준회원 중 휴학생과 졸업유예생이 다음 각 호의 등록기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한 경우 남은 기간 정회원이 된다. 단,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당선 공고일까지는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 밖에 정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1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⑦ 교류회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규정하며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제반 사항의 권리와 의무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다.
 1. 교환·방문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에서 수학하는 자
 2. 본교 재학생 중 7+1 파견학생·교환학생·자비유학 및 현장실습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아닌 국내·외 타 기관에서 수학하는 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되는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성적지향·성정체성·인종·사상·종교·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교양·문화·예술·정치·취미·학술 등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③ 본회의 회원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본 회의는 집회·결사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미 보장받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 회의 활동과 운영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본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가 적정한 시간 내에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독자적인 언론기관을 만들고, 매체를 제작·편찬·배포할 자유를 가진다. 각 언론의 편집권과 독립성은 침해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⑥ 본회 회원은 회칙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⑦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학생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할 의무를 지닌다.
- ⑧ 본회의 회원과 본회의 각 기구는 본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본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하여야 한다.
- ⑨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⑩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조(자치활동)

-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양·문화·예술·정치·취미·학술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한다.
- ② 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활동하는 동아리·학회·소모임 등의 자치단위를 포괄한다.
- ③ 본회가 포괄하는 자치단위는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열거된 권리 · 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대한 권리는 그 어떠한 내·외부적 요인으로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7조(구성 및 기구)

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활동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별 목적에 부합하는 기구를 둔다.

1. 의사결정기구로는 학생총회·학생총투표·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공청회·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2장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한다.
2. 집행기구로는 중앙집행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특별기구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4장 집행기구」에서 정한다.
3. 본회는 절대적 독립성을 요하는 사안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하는 독립기구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5장 독립기구」에서 정한다.
4. 본회는 산하기구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학부·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6장 산하기구」에서 정한다.

제8조(학교 운영 활동)

- ①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주요 사항
2.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3. 학교 정책의 수립과 진행
4. 학칙에 대한 수정 발의
5. 본교의 발전을 위한 사항
6.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③ 본회는 본회에 참여하는 학교 기구 혹은 위원회에 학생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사무처리)

- ① 본회 각 단위의 사무처리는 간소화·표준화·정보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한다.
- ② 본회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록물관리)

- ① 본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모든 기록물 관리를 의무화하며 이는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역사적 근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 ②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의도적 또는 자의적인 훼손을 금지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거나 기록물을 소홀히 관리한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 ③ 제1항,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간운영)

- ① 본회는 본회의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간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의사결정기구

제1절 통칙

제12조(기본이념)

본 회의 의결기구는 본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3조(의결기구의 위계)

- ① 본 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으며, 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는 총장선출과 관련한 사안에 한해 학생총회와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
- ③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의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④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⑤ 하위 의결기구에서 특별한 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상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기)

본 회의결기구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1회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2. 제2회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3. 제3회기: 2학기 개강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제4회기: 1월 1일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제15조(의장단)

- ① 본 회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 부의장은 부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의장단은 본 회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③ 의장단은 본 회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장단 직무의 제한)

- ① 의장단은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 혹은 부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총학생회장단이 의장단일 때,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하여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단에서 물러나야 한다.
 1. 의장단 개인과 자기 관련성이 있는 안건
 2. 중앙집행위원장과 위원의 해임건의안
 3.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의 결정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
- ③ 의장이 물러날 경우, 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 ④ 부의장이 물러날 경우 학생총회에 한하여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임시부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임시부의장의 인준은 개의 직후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⑤ 의장단이 모두 물러날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2인을 임시의장단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임시의장단의 인준은 개의 직후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임시의장 및 임시부의장이 개의 직후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⑥ 의장단의 사고 혹은 탄핵 소추안의 발의로 인한 의장단이 직무 정지된 경우에도 제3항, 제4항혹은 제5항을 따른다.

제17조(사무·재정)

①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는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중앙운영위원은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결기구의 재정은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제18조(긴급한 사항)

① “긴급한 사항” 이란 회의 소집 과정을 생략해서라도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항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24조(소집) 제6항 혹은 제43조(소집) 제8항에 따라 각 의결 기구의 의장이 소집요구 없이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혹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의 결정으로 학생총회 혹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목적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소집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
2. 공고 기간·절차를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

④ 제2항에도 특별한 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회의는 긴급한 사항으로 소집할 수 없다.

제19조(안건의 발의)

① 안건 발의는 각 의결기구에서 정한 발의요건에 따른다.

② 정기회의를 제외한 회의에서 소집 공고부터 회의 종료 전까지 안건 발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정기회의의 소집 공고부터 회의 종료 전까지 발의된 추가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제20조(연서의 심의)

①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대한 소집요구 및 안건 발의가 연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위 의결기구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연서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및 안건 발의가 연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개의 직후 연서의 정당성에 대해 심의한다.

③ 연서의 서식 및 기재 정보가 「사무처리세칙」에 따른 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 각 의결기구는 연서가 무효하다고 볼 수 있다.

④ 각 의결기구의 구성원과 방청인들은 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제21조(안건의 의결)

- ① 각 의결기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 과반의 의견이 없을 때, 기권이 과반수일 때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안건의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지며, 직접 출석(학생총투표는 투표)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 ① 본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특정 개인·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에 해당 개인·단체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자는 회의체의 구성원과 같은 발언권을 가진다.
-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진행세칙)

그 밖의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총회

제24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25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6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개의 희망일(연서 제출일 기준 10일 후 30일 이내)
3. 소집요구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4. 대표 소집요구인

③ 제1항에 따른 소집요구를 받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학생총회 개의일시를 결정한다. 개의일시는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 개의 희망일시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④ 제27조(소집 공고)에 의한 소집 공고 없이 소집된 총회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두개 이상의 총회를 동일한 날에 소집할 수 없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생총회 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소집 공고)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회의 일시 최소 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6 조(소집) 제6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를 소집하는 뜻
2. 회의 일시
3. 회의 장소
4. 상정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③ 제2항에 의한 공고문은 총학생회가 관리하는 모든 온 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의 및 의결)

학생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9조(권한)

①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 및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의장이 소집공고와 함께 상정한 안건
2. 기타 해당 총회 진행 도중에 발의된 안건

②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련된 중앙집행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③ 제26조(소집) 제6항에 의해 소집된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학생총회진행)

기타 학생총회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학생총투표

제31조(지위)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투표이다.

제32조(권한)

- ①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학생총회 의결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총회를 통하여 의결된 안건은 학생총투표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다.
- ② 학생총투표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동일 안건을 당해 학기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33조(투표권)

본회의의 모든 정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34조 (시행)

-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학생총회 의장이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2.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4.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②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는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시행 희망일시(연서 제출일 기준 10일 후 30일 이내)
 3. 시행요구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4. 대표 시행요구인
- ③ 제34조(시행) 제1항에 의하여 시행요구를 받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학생총투표시행일시를 결정한다. 이때 시행일시는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시행 희망일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시행 희망일시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제35조(시행 공고)

- ① 학생총회 의장은 제34조(시행)에 의하여 결정된 학생총투표 시행을 시행 일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학생총투표 시행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학생총투표 시행 일시

2.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③ 제2항의 공고문은 총학생회가 관리하는 모든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36조(성립 및 의결)

① 학생총투표는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정회원 명부의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7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

①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투표 시행 준비를 보조한다.

⑤ 그 밖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투표 기간)

① 투표 기간은 3일의 범위에서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 종료 1시간 전까지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을 경우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을 최대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투표 방법·개표·결과 공고)

학생총투표의 투표 방법·개표·결과 공고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40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41조(구성)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42조(대의원)에서 정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42조(대의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 학생회장
3. 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각 분과위원장
4. 각 단과대학·독립학부는 다음 공식에 따른 P 명의 비례대표를 해당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여 파견한다. 단, 해당 단과대학 내에 부학생회장을 두는 학부·과 학생회가 존재하는 경우 비례대표로 학부·과 부학생회장을 우선적으로 파견한다.

| | |
|---|---|
| $x_n = \frac{S_n}{R_n} \dots\dots\dots ①$ $Min(x_1, x_2, \dots, x_n) = y \dots\dots\dots ②$ $\left[\frac{1}{2} \left(\frac{S_k}{y} - R_k \right) \right] = P_k \dots\dots\dots ③$ | <p>S_n = (n)단과대학 재학생 수($S_n \geq 100$)</p> <p>R_n =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n)단과대학 대표자 수</p> <p>n, k = 단과대학 이름</p> <p>x_n = (n)단과대학의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대표자 수 대비 재학생 수</p> <p>$y = x_n$ 중 최소값</p> <p>P_k = k 단과대학 비례대표자의 수</p> |
|---|---|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소속 단위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선거 미실시 등의 이유로 대의원이 궐위인 경우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단위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 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 단위에서 파견한 비례대표의 임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며 그 세부적인 기간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1학기 개강일 이후 파견 시점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를 상반기 비례대표의 임기로 한다.
 2. 2학기 개강일 이후 파견 시점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를 하반기 비례대표의 임기로 한다.
- ⑤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 단위에서 파견한 비례대표는 제4항의 상반기, 하반기 별로 다른 비례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나 한 번 파견된 비례대표는 임기 도중에 그 어떠한 사유로도 변경될 수 없다. 단, 신임 학생회장이 선출되거나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 무산의 사유로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었을 경우 비례대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비례대표의 임기는 파견 시점부터 제4항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비례대표의 임기 도중 비례대표가 궐위될 경우 재적에서 제하며 해당 단위는 궐위된 비례대표에 갈음하여 추가적으로 다른 비례대표를 파견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1인인 독립학부의 학생회장이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직이나 부의장 직을 수행할 경우, 발언권만을 가지는 임시대표 1인을 해당 독립학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여 파견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임시대표의 발언권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 직후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로 인준한다.

제43조(대의원의 의무)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석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 일시 3일 전부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 일시 3일 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결석한 경우 의장은 결석한 대의원에 대하여 대자보 등을 통하여 결석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석사유 공개와 사과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지각하게 되거나 조퇴해야할 때에는 지각·조퇴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지각·조퇴 사유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 일시 3일 전부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 일시 3일 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지각·조퇴한 경우, 의장은 지각·조퇴한 대의원에 대하여 대자보 등을 통하여 지각·조퇴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각·조퇴 사유 공개와 사과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결석거나 지각·조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경우 의장은 해당 대의원의 무단 결석·지각·조퇴 사실, 소속, 직위, 이름의 명단을 제2항 및 제5항의 결석계 및 사유서 제출 마감기한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총학생회가 관리하는 모든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대의원은 중앙운영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4조(결석계 및 지각·조퇴 사유서)

- ① 제43조(대의원의 의무) 제1항의 결석계는 매우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한하여 정기전체학생 대표자회의 및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결석계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제43조(대의원의 의무) 제4항의 지각·조퇴 사유서는 매우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한하여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각·조퇴 사유서의 정 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③ 비상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는 결석계 및 지각·조퇴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결석계 및 지각·조퇴 사유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및 지각·조퇴 사유
 3. 결석계 및 지각·조퇴 사유서 제출 일시 및 서명

제45조(소집)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비상전체학생대표자 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매 학기 1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매 학기 개 시 후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있을 경우 당선 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가 불가능할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 한다.
- ⑤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중앙운영위원회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본회 정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⑥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개의 희망일(연서 제출일 기준 3일 후 10일 이내)
 3. 소집요구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4. 대표 소집요구인
- ⑦ 제5항에 따른 소집요구를 받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일시를 결정한다. 이때 개의일시는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 개의 희망일시에서 3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 ⑧ 비상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46조(소집 공고)

- ①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일시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45조(소집) 제8항에 의한 소집은 공고일시의 제한이 없다.
- ② 제1항의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를 소집하는 뜻
 2. 회의 일시
 3. 회의 장소
 4. 상정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 ③ 제2항에 의한 공고문은 총학생회가 관리하는 모든 온 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7조(개의 및 의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8조(회원 관련 권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의한 행위로 인한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9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 관련 권한)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26조(소집)제1항에 따라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해당 학생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34조(시행)제1항에 의하여 학생총투표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

제50조(총학생회장 관련 권한)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04조(총학생회장단의 권한) 제5항 및 제51조(외부 단체 가입 관련 권한) 제1항에 의하여 본회의 외부 단체 최초가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04조(총학생회장단의 권한) 제5항에 의하여 본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는 대외활동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05조(사퇴) 제1항에 의하여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의 사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외부 단체 관련 권한)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04조(총학생회장단의 권한) 제5항에 의하여 본회의 외부 단체 최초 가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가입된 외부 단체에서의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가입되어 있는 외부 단체에 대한 탈퇴 안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의될 수 있다.

1. 총학생회장단의 발의
2.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 회기 중 대의원에 의한 발의

④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 회기 중 가입된 외부 단체 탈퇴에 대한 대의원의 발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51조 3항과 4항에 의해 외부 단체 탈퇴 발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발의안에 대한 모든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외부 단체에서 본회의 활동을 중지한다.

⑥ 외부 단체 탈퇴 안건의 경우,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외부 단체 탈퇴 안건이 부결될 경우 당해 학기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제52조(중앙집행위원회 관련 권한)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08조(구성) 제3항에 의하여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을 인준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11조(업무)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보고된 본회의 결산보고서와 예산안 및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받는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53조(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권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1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항 및 제118조(비상대책위원) 제2항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및 위원을 인준할 수 있다.

제54조(특별기구 관련 권한)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27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기구의 인준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28조(재인준) 제1항에 의하여 매학기 정기회의에서 특별기구의 보고를 받으며 제128조(재인준) 제2항에 의하여 특별기구의 재인준을 의결할 수 있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32조(경고) 제3항에 의하여 특별기구를 경고할 수 있다.
-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33조(해소)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기구의 해소를 의결할 수 있다.
-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34조(특별기구연석회의) 제6항에 의하여 특별기구들에 대한 자치회비 배분율, 예산 및 공간 편성을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5조(독립기구 관련 권한)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38조(성립요건) 제3항에 의하여 독립기구를 인준할 수 있다.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42조(해소) 제1항에 의하여 독립기구의 해소를 의결할 수 있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43조(독립기구회칙) 제3항에 의하여 독립기구 회칙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56조(재정 관련 권한)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79조(의무) 제4항, 제192조(예산)에 의하여 본회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86조(관리) 제4항에 의하여 본회의 유형자산 목록을 보고받는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88조(자치회비)에 의하여 자치회비의 인상·인하·동결·분배 비율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자치회비 분배 비율에 한하여 교지편집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며 재적인원에 포함한다.
-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93조(예산의 가집행과 추가경정예산) 제1항에 의하여 예산의 가집행을 의결할 수 있다.
-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93조(예산의 가집행과 추가경정예산) 제2항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96조(중앙감사위원회) 제4항에 의하여 중앙감사위원장단 및 중앙감사위원을 인준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정·감사 관련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감사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7조(회칙·세칙·규칙·학칙 관련 권한)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의 모든 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규칙·분회를 구성하는 단위의 회칙 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225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에 의하여 회칙 해석을 의결할 수 있다.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58조(징계에 관한 권한)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특별기구, 독립기구가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는 제132조(경고), 제133조(해소)에서 정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0조(기록물관리) 제2항의 본회의 기록물을 의도적 또는 자의적으로 훼손한 사실이 명백하거나, 제182조(정의)의 본회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절도·훼손한 사실이 명백하거나 제10조(기록물관리) 제2항의 본회의 기록물을 의도적 또는 자의적으로 훼손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또는 선거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 본회 회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제1호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공식 사과문 게재 및 공개 사과 요구
2.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3. 제명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로 정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제1호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공식 사과문 게재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공개회의에서의 공개 사과 요구
2. 대의원 자격 박탈(대의원 자격 박탈이 결정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에서도 제하며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직도 박탈한다.)
3. 대의원 자격 영구적 박탈(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직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⑤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공식 사과문 게재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공개회의에서의 공개 사과 요구
2. 해임

⑥ 독립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공식 사과문 게재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공개회의에서의 공개 사과 요구
2. 독립기구장의 해임

⑦ 현재 총학생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직에 있는 자에게는 제3항 제3호와 제4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를 할 수 없다.

⑧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단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면 의장은 그 즉시 징계의 대상·사유·종류·기간을 공고한다.

제59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진행)

기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60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이자 운영기구이다.

제61조(구성)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및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는 개의 직후에 인준을 받아 해당 단위의 부회장이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62조(소집)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중앙운영위원회와 비상중앙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중앙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 소집한다.
- ③ 비상중앙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63조(소집 공고)

- ①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일시 24시간 전에 모든 운영위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62조(소집) 제3항에 의한 소집은 공고일시의 제한이 없다.
- ② 제1항의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를 소집하는 뜻
 2. 회의 일시
 3. 회의 장소
 4. 상정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 ③ 제1항에 의한 공고문은 모든 중앙운영위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64조(개의 및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의무)

- ①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 ②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무단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중앙운영위원에 대하여 제211조(징계)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단, 중앙운영위원회 무단 불참에 대한 기준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의결하고 공고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운영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 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본회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 할 의무를 진다.

⑤ 중앙운영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한시적 업무 분담 요청에 응할 의무를 진다.

제66조(회원 관련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의한 행위로 인한 정학 미만의 징계를 받은 자를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7조(학생총회 관련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장단 직무의 제한) 6항에 의하여 학생총회 의장단이 사고일 경우 임시의장단을 인준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26조(소집) 제6항에 의하여 학생총회 개의일시를 결정한다.

제68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련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소집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공고 일시 전까지 제42조(대의원) 제1항에 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의석의 수를 각 단위별로 정리하여 공고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장단 직무의 제한) 6항에 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단이 사고일 경우 임시의장단을 인준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제45조(소집) 제5항에 의하여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45조(소집) 제7항에 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일시를 결정한다.

제69조(중앙운영위원회 관련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장단 직무의 제한)에 의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장단이 사고일 경우 임시의장단을 인준한다.

제70조(학생총투표·정책투표 관련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34조(시행) 제3항에 의하여 학생총투표 시행일시를 결정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1조(정책투표) 제2항에 의하여 정책투표 시행을 의결하고 제81조(정책투표) 제4항에 의하여 시행일시를 결정한다.

제71조(총학생회장 관련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본회를 대변한 대외적 입장을 표명할 경우 본회 차원의 협의문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05조(사퇴) 제2항에 의하여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의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의결을 통해 그 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제106조(탄핵소추)에 의하여 학생총회 소집일시 또는 학생총투표 시행일시를 결정한다.

제72조(중앙집행위원회 관련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11조(업무)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보고된 본회의 결산보고서와 예산안·결산 및 본회의 운영 사항을 심의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제73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관련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16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제2항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4조(특별기구 관련 권한)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26조(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별기구의 인준요청을 심의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 상정을 의결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활동 보고와 계획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32조(경고)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를 심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제132조(경고) 제2항에 의하여 해당 특별기구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33조(해소)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기구의 해소를 심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35조(특별기구회칙) 제2항에 의하여 특별기구 회칙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75조(독립기구 관련 권한)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38조(성립요건) 제2항에 의하여 독립기구 설치요건을 심의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43조(독립기구회칙) 제2항에 의하여 독립기구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76조(특별위원회 관련 권한)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속적인 연구·논의·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특정 기간 동안 이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특별위원회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설치 대상이 되는 특별위원회의 목적·기능·지위·설치 및 운영기간 등을 규정한 특별위원회 회칙을 중앙운영위원회가 제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본회 정회원으로 하며 반드시 그 선출 방식을 해당 특별위원회 회칙에 명시하고 위원장은 반드시 중앙운영위원 중 1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 회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7조(단과대학·독립학부 관련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51조(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칙) 제3항에 의하여 단과대학·독립학부 회칙 개정사항을 보고받는다.

제78조(동아리연합회 관련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70조(동아리연합회 회칙) 제3항에 의하여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개정 사항을 보고받는다.

제79조(학생자치언론 관련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77조(학생자치언론회칙) 제2항에 의하여 학생자치언론의 회칙 개정 사항을 보고받는다.

제80조(재정·감사 관련 권한)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92조(예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본회의 상반기 및 하반기 예산안을 심의·조정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99조(독립기구) 제2항에 의하여 독립기구에 교비지원금 지원을 승인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재정·감사와 관련된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감사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1조(선거 관련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제201조(시기) 제2항 및 제204조(보궐선거)에 의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보궐선거 시행 일시를 결정하고 제20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항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선거와 관련된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2조(회칙·세칙·규칙 관련 권한)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213조(제·개정안 발의) 제1항에 의하여 회칙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제213조(제·개정안 발의) 제1항, 제215조(제·개정안 심의) 제1항 및 제221조(세칙의 제정·개정·폐지) 제2항에 의하여 회칙·세칙의 제정·개정·폐지를 심의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제223조(회칙에 부수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제2항에 의하여 일반규칙의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할 수 있다.
-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제225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 제2항에 의하여 회칙 해석을 주 안건으로 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3조(기록물 관련 권한)

중앙운영위원회의 기록물과 관련된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제84조(공간운영 관련 권한)

중앙운영위원회의 공간운영 관련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간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중앙운영위원회진행)

기타 중앙운영위원회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절 공청회

제86조(공청회)

공청회는 총학생회 전반의 사안에 대한 공유 및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특정 의제나 쟁점적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회원 및 자치단체, 그 밖의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의사결정기구들의 의사결정을 보조하여 본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87조(공청회의 개최 및 공고)

① 정기공청회는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하되 개강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학기 학생총회 개최가 의결된 경우 정기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3·4월 총학생회장단 재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당선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선거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개최가 의결된 경우 정기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청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시행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개최한다.

1. 본회 정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중앙운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4. 총학생회장의 시행요구

③ 제2항의 연서에 따른 공청회 시행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1. 공청회의 내용
2. 시행 희망일 (연서 제출일 기준 10일 후 30일 이내)
3. 시행요구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4. 대표 시행요구인

④ 제2항에 의하여 시행요구를 받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청회 시행일시를 결정한다. 이때 시행일시는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시행 희망일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시행 희망일시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⑤ 중앙운영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모든 총학생회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제목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설명
4. 공청회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온라인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88조(공청회의 내용)

① 공청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한 공유 및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1.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예·결산안
2. 총학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의 기조 및 정책 이행 상황
3.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활동 및 활동계획
4. 총학생회칙 및 세칙 제·개정안
5. 본회 회원 전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6. 학생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적 사안
7. 기타 총학생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 전반

② 정기공청회는 제1항 제1~3호의 사안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

제89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공청회는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재자와 발표자를 둔다. 단, 정기공청회에서 제88조(공청회의 내용) 제1항 제1~3호의 사안을 다루는 경우 발표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총학생회장단이 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른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정책이나 결정 사항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
2. 해당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총학생회장단 보다 더욱 전문적이라고 판단되는 이가 존재하는 경우
3. 그 외 총학생회장단의 역량이나 중립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경우

③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치단체의 대표 혹은 회원
3. 해당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 (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는 주재자의 공청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각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 상호 간의 토론, 참석자의 서면 질의 및 자유질의, 발표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된다. 단, 정기공청회에서 제88조(공청회의 내용) 제1항 제1~3호의 사안을 다루는 경우 발표자의 순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기타 공청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1조 (공청회 결과의 공개 및 반영)

① 공청회의 속기록과 그 요약본은 총학생회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며,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본 회의 의사결정기구인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결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절 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

제92조 (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

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이하 합동대표자총회)는 외대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인 학생, 직원, 교수 모두가 참여하는 총장선출제도에 관한 양 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총장선출과 관련한 사안에 한해 학생총회와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

제93조 (의장)

① 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의 공동 의장은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인 경우 부총학생회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 의장은 본 총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공동 의장은 본 총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94조 (구성)

①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각 학부·과 학생회장

3. 양 캠퍼스 동아리연합회 회장

② 단, 학생회장의 궐위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단위의 경우,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이 가진 모든 의무와 권한을 동일하게 부여한다.

제95조 (소집)

① 공동 의장은 제97조(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해야 하는 경우 합동대표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합동대표자총회의 공동 의장은 회의 일시 최소 7일 전에 그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를 소집하는 뜻

2. 회의 일시

3. 회의 장소

4. 상정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④ 제3항에 의한 공고문은 각 캠퍼스 내에 설치된 모든 총학생회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6조 (대의원의 의무)

① 합동대표자총회의 대의원은 합동대표자총회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② 합동대표자총회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합동대표자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사전 제출함으로써 해당 단위 정회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해당 단위 운영위원회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권한 위임 동의에 대한 논의 및 의결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임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의원의 합동대표자총회 불출석 사유

2. 권한 위임 대상자 지목 사유

3. 권한 위임에 관한 해당 단위 운영위원회 이상 의결기구의 회의록

④ 제3항에 의한 위임장은 해당 단위 학생회의 모든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7조 (권한)

① 합동대표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장후보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 파견 위원 결정

2.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생단위 추인

3. 총장후보선출과 관련된 학생 내규에 대한 논의 및 결정

4. 총장후보선출 관련 사안 대응에 대한 논의 및 결정

5. 그 외 총장후보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하여 합동대표자총회의 결정은 학생총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98조 (진행)

합동대표자총회의 세부 진행 및 총장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총학생회장단

제99조(총학생회장의 지위)

-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총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의·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된다.
- ② 학교 당국과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한다.
- ③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며 학교 간 연합활동을 관장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사고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가, 총학생회장단 모두 궐위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단이 총학생회장단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0조(부총학생회장의 지위)

- ①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이 사고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총학생회장이 궐위일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01조(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의 임기)

- ①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재선거로 당선된 경우는 당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11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를 이듬해 3·4월 재선거 종료일까지로 연장한다. 단,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12월 31일 이후 궐위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이듬해 3·4월 재선거가 무산될 경우 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를 즉시 종료한다.

제102조(연임 및 중임)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03조(총학생회장단의 책임)

- 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총회·학생총투표·전체학생대표자회의·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

대표자총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사회정의구현을 위하여 기여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총학생회장단은 모든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견을 학교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⑥ 총학생회장단은 정식 회의체계 외에서 본회 독립기구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 ⑦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⑧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전까지 인수·인계를 진행할 의무를 진다.
- ⑨ 총학생회장단은 가입된 외부 단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과 활동을 매 학기 정기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104조(총학생회장단의 권한)

- ①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 임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총회·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회의·특별기구연석회의·중앙집행위원회 회의의 소집권을 갖는다.
- ③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 이외에 사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계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총학생회장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⑤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변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협의문 작성은 중앙운영위원회 동의를, 외부 단체 최초 가입 또는 본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는 대외 활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제105조(사퇴)

- ①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사퇴를 해야 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퇴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06조(탄핵소추)

- 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발의될 수 있으며 연서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3분의 2의 연서에 의한 발의
 - 2. 본회 정회원 10분의 1의 연서에 의한 발의
- ② 연서에 따른 발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발의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3. 대표 발의자

③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부결될 수 없다.

④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접수되는 시점부터 탄핵소추안에 대한 모든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탄핵소추대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그 즉시 임시의장단 혹은 임시부의장을 선출하고 학생총회 소집일시 또는 학생총투표 시행일시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의 개의 및 시행일시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제27조(소집 공고), 제35조(시행 공고)에 의하여 공고한다.

⑦ 학생총회는 제28조(개의 및 의결), 학생총투표는 제36조(성립 및 의결)에 의하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

⑧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학생회장단 중 2인 전체 또는 2인 중 1인을 대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⑨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소추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4항 집행기구

제1절 중앙집행위원회

제107조(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08조(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단이 임명하되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을 거친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인준 받아야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이 있으면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결정은 임시로 유효하다.

제109조(중앙집행위원장)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의 집행에 관한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관리·감독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이 임명한 뒤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설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사개진권을 갖는다.

제110조(국서)

- ①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국서를 편제할 수 있다. 단, 모든 편제는 국서를 중심으로 하되 국서 산하에 다른 형태의 편제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편제된 각 국서에는 필요에 따라 국장과 차장 및 국원을 둘 수 있다.

제111조(업무)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 외에도 학생총회·학생총투표·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학생총투표·정책투표·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의·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 개의 및 시행을 준비한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예·결산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학생총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에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모든 사업을 구상·집행할 경우 「기록물관리세칙」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⑦ 당기 중앙집행위원회는 차기 중앙집행위원회를 위해 인수·인계 작업을 준비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⑧ 중앙집행위원회는 정회원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회원들의 명단을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12조(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상황일 경우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기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의 업무·권한·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2절 비상대책위원회

제113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가 궐위될 경우 궐위 기간 동안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114조(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 비상대책위원회 업무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5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1. 총학생회장단 재·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2.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궐위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30일이 넘지 않을 경우
3.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30일이 넘지 않을 경우
4.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제116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115조(구성)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각 단과대학·독립학부·동아리연합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일 경우 비상대책위원장도 구성에 포함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서 호선된 1인으로 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2차 회의에서 다음에 의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최다득표자가 위원장, 차득표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⑤ 제1, 2차 회의의 소집·진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의장이 한다.

⑥ 제1, 2차 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⑦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과정(후보자 정보·투표방식·투표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결과(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11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간선투표로 선출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후보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직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의 직을 수행하고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③ 본회의 정회원 및 휴학생은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20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될 시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18조(비상대책위원)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 선출되면 그 즉시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소속 단위에서 임명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비상대책위원은 제11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항에 의하여 소집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19조(사퇴)

①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사퇴를 해야 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사퇴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0조 (탄핵소추)

①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한 탄핵은 비상대책위원장 · 부비상대책위원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② 제120조 1항에 의해 발의 된 탄핵소추안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발의될 수 있으며 연서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3분의 2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분의 1 연서에 의한 발의

3. 본회 정회원 20분의 1 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③ 연서에 따른 발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2. 발의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3. 대표 발의자

④ 제120조 1항에 의해 발의 된 탄핵소추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결될 수 없다.

- ⑤ 제120조 1항에 의해 발의 된 탄핵소추안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접수되는 시점부터 탄핵소추안에 대한 모든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피소추인의 직무를 정지한다.
- ⑥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그 즉시 임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일시를 결정한다.
- ⑦ 제6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일시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제46조(소집 공고)에 의하여 공고한다.
- ⑧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
- 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소추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121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단 재선거가 무산될 경우 총학생회칙 제116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제1항에 따라 현임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즉시 종료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를 소집한다.

제3절 특별기구

제122조(지위)

특별기구는 총학생회가 모두 관장하기 어렵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총학생회의 감독 하에 운영되는 기구이다.

제123조(구성)

본회의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로 분류된다.

1. 학생복지위원회
2. 문예갈래협의회
3. 도서관학생위원회
4. 생활자치도서관
5. 영상사업단
6. 공간운영위원회

제124조(성립요건)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설치된다.

1. 본회에서 필요한 관련 분야의 중앙집행위원회 국서가 없거나 존재하고 있는 중앙집행위원회 국서의 활동만으로는 회원 전체 또는 특정회원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할 경우

2.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 필요할 경우
3. 특정 분야에 관련된 자치단체들의 연합단체 또는 대표단체

제125조(특별기구 인준 요청 방식)

특별기구 인준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준요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기구 인준 요청서(「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
2. 회원명부
3. 소개서
4. 사업계획서
5.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
6. 해당 단체의 회칙
7. 총학생회장단의 동의서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

제126조(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 요청이 있으면 해당 단체가 제124조(성립요건)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124조(특별기구 인준 요청 방식)의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안건과 함께 제125조(특별기구 인준 요청 방식)의 제출서류들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 ③ 제125조(특별기구 인준 요청 방식) 제6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칙에는 성립 목적·민주적 대표 선출과정·민주적 의사결정구조·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특별기구장을 따로 두지 않는 특별기구의 회칙에는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7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26조(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특별기구가 인준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인준안이 통과되고 24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기구의 기구명
 2. 해당 특별기구 기구장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3. 해당 특별기구의 소개

제128조(재인준)

- ① 모든 특별기구는 매학기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인준을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 보고서(기구장의 선출과 회원의 선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해당 학기 활동 계획서
 4. 회원명부
 5. 해당 기구의 회칙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심의 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의 재인준을 의결한다.
- ③ 특별기구의 재인준 사실은 따로 공고하지 아니한다.
- ④ 특별기구의 재인준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해당 특별기구의 활동은 해당 학기동안 중지되며, 모든 업무가 총학생회로 이관된다.

제129조(의무)

- ① 특별기구는 그 인준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특별기구는 그 운영에 있어서 총학생회장단의 요구에 응할 의무를 진다.
- ③ 특별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 활동과 계획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130조(기구장)

- ① 특별기구장은 해당 특별기구를 대표한다. 단, 평의회 체계로 운영되는 특별기구는 특별기구장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특별기구장은 해당 특별기구의 회칙에 따라 민주적 대표 선출과정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의 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 ③ 특별기구의 재인준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제청으로 해당 특별기구의 임시기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31조(재정)

- ① 특별기구 운영을 위한 재원은 자치회비,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② 특별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특별기구의 재정은 해당 특별기구의 운영 목적과 본회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④ 특별기구는 자치회비의 배분을 받으며 특별기구의 재정 배분과 관련된 사항은 제198조(특별기구)에서 정한다.
- ⑤ 특별기구의 재인준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해당 특별기구의 자산, 교비지원금 및 기부금 등의 모든 재정은 총학생회로 귀속된다.
- ⑥ 그 밖에 특별기구의 재정에 관련된 사항은 「제11장 재정」을 준용한다.

제132조(경고)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를 심의하여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해당 특별기구의 회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단, 특별기구장을 따로두지 아니하는 특별기구의 회칙에는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특별기구가 본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사유와 관련하여 특별기구의 해명이 필요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 기구에 기한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명이 있을 경우 해명 내용을 참작하여 경고 여부를 재심의하고 해명이 없거나 부실할 때는 제1항에 따른 경고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항에 따라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특별기구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경우 환수확정금액이 모두 환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별 기구의 기구장 및 모든 구성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학기 동안 그 기구의 모든 권한은 총학생회에 귀속된다.

1. 공식 사과문 게재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공개회의에서의 공개 사과
2. 해당 학기 자치회비 배분액의 2분의 1을 총학생회로 환수

④ 제3항에 의하여 특별기구의 기구장 및 모든 구성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에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하여 기구장을 새로 선출한다. 이때 자격이 상실된 기구장 및 모든 구성원은 다시 해당 특별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133조(해소)

① 특별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의 해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32조(경고)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경고 후 1년 내에 추가로 경고를 받을 경우
2. 본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특별기구의 해소가 결정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소안이 통과된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기구의 기구명
2. 해당 특별기구의 해소 결정 사유

제134조(특별기구연석회의)

① 모든 특별기구는 특별기구들의 활동 장려와 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연석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② 특별기구연석회의는 총학생회장단 및 모든 특별기구장으로 구성된다. 단, 특별기구장이 사 고이거나 평의회 체계로 운영되는 특별기구는 내부에서 호선된 1인을 파견한다.

③ 총학생회장단은 특별기구연석회의의 의장단이 되고 학기당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할 의무를 진다.

④ 특별기구연석회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 ⑤ 특별기구연석회의는 특별기구에 대한 자치회비 배분율, 예산 및 공간 편성을 심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5항에 따라 발의된 안건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35조(특별기구회칙)

- ① 특별기구는 특별기구별 회칙을 제정하여 해당 특별기구 운영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규정 한다.
- ② 특별기구가 해당 특별기구의 회칙을 개정하려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2항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독립기구

제136조(지위)

- ① 독립기구는 지속적인 논의를 요하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운영기구이다.
- ② 독립기구는 본회의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를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기구,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받는다.

제137조(구성)

본회의 독립기구는 다음 각 호로 분류된다.

1. 중앙감사위원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중앙투표관리위원회
4.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제138조(성립요건)

- ① 독립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구의 업무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할 경우
 2. 해당 기구의 업무가 정기적인 활동을 요하는 경우
 3. 해당 기구의 업무가 반드시 그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경우
- ② 독립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활동 계획서
4. 총학생회칙 준수 서약서(「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
5. 해당 단체의 회칙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④ 독립기구가 인준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인준안이 통과되고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 해당 독립기구의 기구명
2. 해당 독립기구 기구장의 성명,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3. 해당 독립기구의 소개

제139조(의무 및 권한)

- ① 독립기구는 업무의 특별성이 고려된 자체적인 운영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독립기구는 활동하는 영역에 한하여 권고와 징계 등의 조치를 본회의 모든 회원과 제9조(구성 및 기구)에 해당하는 본회의 모든 기구에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③ 독립기구가 행사하는 권고와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회원 및 기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0조(독립기구장)

- ① 독립기구장은 중앙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하며 해당 독립기구를 대표한다.
- ② 독립기구는 해당 회칙에 독립기구장의 선출 방법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③ 독립기구장은 해당 독립기구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출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141조(독립기구 구성원)

독립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독립기구의 회칙을 기반으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2. 독립기구장이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위촉한 자

제142조(해소)

① 독립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소할 수 있다. 단, 중앙감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소될 수 없다.

1. 그 업무상의 목적을 다한 경우

2. 해당 독립기구가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② 독립기구의 해소가 결정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소안이 통과된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 해당 독립기구의 기구명
2. 해당 독립기구의 해소 결정 사유

제143조(독립기구회칙)

① 독립기구는 독립기구회칙을 제정하여 해당 독립기구 운영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② 독립기구가 해당 독립기구의 회칙을 개정하려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2항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산하기구

제1절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제144조(지위)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의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자격을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145조(회원 및 그 권리와 의무)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부과정 학생으로 한다.

②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속한 학부·학과로 편입·소속 변경한 자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휴학·정학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⑥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부·학과를 이중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⑦ 회원의 유형·권리·의무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칙에서 정한다.

제146조(의사결정기구)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총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대표자회의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상설 의사결정기구이자 운영 기구이다.
- ④ 각 의사결정기구의 지위·구성·의장·소집·권한·개의·의결·의무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칙에서 정한다.

제147조(학생회장단)

-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단,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칙에 의하여 부학생회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를 대표하며 이에 속한 회원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의의 대의원이 되며 부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④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의 지위·임기·책임·권한·사퇴·탄핵소추·선출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칙에서 정한다.

제148조(집행기구)

-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집행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 위원회에 해당 집행위원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궐위의 경우 구성하며 단과대학·독립학부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에, 단과대학·독립학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④ 집행기구의 지위·구성·의장·업무·권한·운영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칙에서 정한다.

제149조(재정)

-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운영을 위한 재원은 교비지원금, 자치회비,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재정은 해당 학생회의 운영 목적과 소속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재정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제11장 재정」을 준용한다.

제150조(단과대학·독립학부의 신설)

- ① 신설된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소속된 정회원들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학생회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창립총회에서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칙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주적 선출 방식에 따라 학생회장(단)선거를 진행한다.

제151조(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칙)

-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조직과 운영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칙은 최대한 존중받는다. 단,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칙이 본 회칙 및 본 회칙에 부수되는 세칙을 위반한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 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의결을 통해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에 회칙 개 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회칙을 개정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의결을 통해 본 회칙을 준용한다. 단, 관련 회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로 규정할 수 있다.

제2절 학부·과 학생회

제152조(지위)

학부·과 학생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의 각 학부·과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자격을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153조(회원 및 그 권리와 의무)

- ① 학부·과 학생회의 회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각 학부·과 과정 학생으로 한다.
- ② 해당 학부·과로 편입·소속 변경한 자도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③ 학부·과 학생회의 회원은 해당 학부·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④ 휴학·정학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⑤ 학부·과 학생회의 회원은 해당 학부·과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⑥ 학부·과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부·학과를 이중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⑦ 회원의 유형·권리·의무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학부·과 학생회칙에서 정한다.

제154조(구성)

- ① 학부·과 학생회는 학생총회·운영위원회·학생회장단·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학부·과 학생회칙에서 정한다.

제155조(의사결정기구)

- ① 학부·과 학생총회는 학부·과 학생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② 학부·과 운영위원회는 학부·과 학생회의 상설적인 의사결정기구이자 운영기구이다.
- ③ 각 의사결정기구의 지위·구성·의장·소집·권한·개의·의결·의무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학부·과 학생회칙에서 정한다.

제156조(학생회장단)

- ① 학부·과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학부·과 학생회칙에 의하여 부학생회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학부·과 학생회장단은 해당 학부·과를 대표하며 이에 속한 회원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학부·과 학생회장은 단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의 대의원이 된다.
- ④ 학부·과 학생회장단의 지위·임기·책임·권한·사퇴·탄핵소추·선출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학부·과 학생회칙에서 정한다.

제157조(집행기구)

- ① 학부·과 집행위원회는 학부·과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해당 학부·과 학생회의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 ② 학부·과 집행위원회는 해당 학부·과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에 해당 집행위원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부·과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학부·과 학생회장(단) 궐위의 경우 구성되며 학부·과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부·과 학생회장(단)에, 학부·과 비상대책위원회는 학부·과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④ 집행기구의 지위·구성·의장·업무·권한·운영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학부·과 학생회칙에서 정한다.

제158조(재정)

- ① 학부·과 학생회 운영을 위한 재원은 자치회비,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② 학부·과 학생회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학부·과 학생회의 재정은 해당 학생회의 운영 목적과 소속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학부·과 학생회의 재정에 관련된 사항은 「제11장 재정」을 준용한다.

제159조(학부·과의 신설)

- ① 신설된 학부·과의 학생들은 해당 학부·과 학생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학생회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창립총회에서 해당 학부·과 학생회칙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주적 선출 방식에 따라 학생회장(단)선거를 진행한다.

제160조(학부·과 학생회칙)

- ① 학부·과 학생회는 학부·과 학생회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조직과 운영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② 학부·과 학생회의 학생회칙은 최대한 존중받는다. 단, 학부·과 학생회의 학생회칙이 본 회칙 및 본 회칙에 부수되는 세칙을 위반한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의결을 통하여 해당 학부·과에 회칙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학부·과 학생회가 해당 학부·과 학생회칙을 개정할 경우 지체 없이 소속 단과대학운영 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부·과 학생회의 학생회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의결을 통해 단과대 회칙을 준용한다. 단, 관련 회칙이 단과대에 존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본 회칙을 준용하고, 본 회칙에 관련 회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해당 학부·과의 의사결정기구의 의결로 규정할 수 있다.

제3절 동아리연합회

제161조(지위)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올바른 대학문화 건설을 위한 동아리의 연합체이다.

제162조(회원)

- ① 동아리연합회 회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으로서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 정한다.

제163조(구성)

- ①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중앙동아리로 구성된다.
- ② 제1항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 정한다.

제164조(목적 및 기능)

- ① 동아리연합회는 사회과학·학술·문예·봉사·종교·공연·체육 등의 자치활동을 통해 올바른 민족 대학문화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모든 중앙동아리를 대표하며 동아리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5조(의사결정기구)

- ①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동아리연합회의 상징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② 동아리연합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심의 기구이다.
- ③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의 제반 행정적 실무를 위한 상임 의사결정기구이다.
- ④ 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각 분과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분과에 맞는 활동을 개발·추진하고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결 및 집행기구이다.
- ⑤ 각 의사결정기구의 지위·구성·의장·소집·권한·개의·의결·의무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 정한다.

제166조(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①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단, 동아리연합회회칙에 따라 부회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동아리의 권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총장선출에 관한 양 캠퍼스 합동대표자총회의의 대의원이 되며 부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④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지위·역할·권한·임기·선출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 정한다.

제167조(분과위원장)

- ① 분과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의 각 분과를 대표하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단, 제40조(대의원) 제2항에 따른다.
- ② 분과위원장의 지위·역할·권한·임기·선출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 정한다.

제168조(집행기구)

- ①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해당 동아리연합회의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총회·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에 해당 집행위원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단)이 궐위될 경우에 구성하며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동아리연합회장(단)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④ 집행기구의 지위·구성·의장·업무·권한·운영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 정한다.

제169조(재정)

- ① 동아리연합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교비지원금, 자치회비,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의 재정은 동아리연합회의 운영 목적과 소속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동아리연합회의 재정에 관련된 사항은 「제11장 재정」을 준용한다.

제170조(동아리연합회 회칙)

- ① 동아리연합회는 회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조직과 운영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의 학생회칙은 최대한 존중받는다. 단, 동아리연합회의 학생회칙이 본 회칙 및 본 회칙에 부수되는 세칙을 위반한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의결을 통해 해당 동아리연합회에 회칙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동아리연합회가 회칙을 개정할 경우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의결을 통해 본 회칙을 준용한다. 단, 관련 회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동아리연합회 의사결정기구의 의결로 규정할 수 있다.

제7장 학생자치언론

제171조(지위)

학생자치언론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자치언론기구이다.

제172조(목적)

학생자치언론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한 언론활동을 하며 이를 통하여 학내·외 사안들에 대한 학내 모든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 운영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73조(구성)

- ① 학생자치언론은 제172조(목적)의 학생자치언론의 목적에 부합하는 언론사로 구성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을 학생자치언론으로 한다.

1.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외대」
2. 외대학보
3. 외대교육방송국 서울 FBS
4. 외대교육방송국 글로벌 FBS
5.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Argus

제174조(권리)

- ① 학생자치언론의 독립성은 그 어떠한 내·외부적 요인으로도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생자치언론의 발행 또는 송출까지의 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그 어떠한 내·외부적 요인으로도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③ 학생자치언론은 학생회 관련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 ④ 학생자치언론은 회원 모집의 자율성과 회원의 직책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 ⑤ 학생자치언론은 자유롭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5조(의무)

- ① 학생자치언론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학생자치언론은 해당 언론사의 업무와 목적 및 기능에 관련된 자체적인 운영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학생자치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④ 학생자치언론은 언론의 기본 윤리를 지켜야 한다.

제176조(재정)

- ① 학생자치언론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교비지원금, 자치회비,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② 학생자치언론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학생자치언론의 재정은 학생자치언론의 운영 목적과 소속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학생자치언론의 재정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학생자치언론 회칙으로 규정하되 회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규정이 없을 경우 「제11장 재정」을 준용한다.

제177조(학생자치언론 회칙)

- ① 학생자치언론은 학생자치언론 회칙을 제정하여 해당 언론사의 운영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② 학생자치언론이 해당 언론사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생자치언론의 회칙은 본회 회칙을 위반할 수 없다.

제178조(학생자치언론협의회)

학생자치언론협의회는 학생자치언론협의회 회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조직·운영·지위·구성·의장·소집·권한·개의·의결·의무·학생자치언론 인준 및 인준해제 등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제8장 재정

제1절 통칙

제179조(의무)

- ①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재정은 각 단위의 운영 목적과 본회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③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재정은 수익을 목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 단,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수익은 본회 재정에 귀속된다.
- ④ 본회의 예·결산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을 받는다.
- ⑤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 방식은 「재정·감사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0조(대표자의 책임)

- ①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재정 결재권자는 각 단위의 대표자이다.
- ②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각 단위의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
- ③ 대표자는 제179조(의무)를 지킬 의무를 진다.
- ④ 대표자는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회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
- ⑤ 대표자는 본회 재정을 이용하여 개인·단체·단위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⑥ 대표자는 제179조(의무)와 제180조(대표자의 책임)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211조(징계)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

제181조(적용범위)

- ① 재정 회칙은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는 본 재정 회칙을 위반할 수 없다. 단, 본 재정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단위의 회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2절 자산

제182조(정의)

- ①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가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자산이라 한다.

②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형자산, 소모성 물품으로 구분한다.

제183조(현금 및 현금성자산)

- 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교비지원금, 자치회비,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② 사업에 의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익은 본회 자산으로 귀속되며 수익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가 회비를 걷는 경우 회비는 각 단위의 회칙에 의하여 책정하고 각 단위는 회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4조(유형자산)

- ① 유형자산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정자산으로서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 ② 유형자산의 정의 및 관리는 「재정·감사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5조(소모성 물품)

- ① 소모성 물품은 사용하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못쓰게 되는 자산으로서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 ② 소모성 물품의 정의 및 관리는 「재정·감사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6조(관리)

- ①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자산은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는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이익을 위하여 자산을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다.
- ③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는 재원별로 통장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각각 교비통장, 자치회비통장, 기부금통장, 기타수입통장이라 명한다. 단, 기타수입의 경우 그 규모가 너무 작아 통장 분리의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부통장을 경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④ 본회는 자산 중 유형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며 유형자산의 정의는 「재정·감사운영세칙」으로, 목록 작성 방식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187조(교비 지원금)

- ① 교비는 학교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다.
- ②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는 교비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는 직전 반기에 사용한 모든 교비 증빙자료 사본을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최소 3일 이전까지 본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8조(자치회비)

- ①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회원은 자치회비를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비는 교지대금을 포함한다.
- ③ 자치회비의 수금·보관·배분은 총학생회장단이 한다.
- ④ 자치회비는 본회의 운영 및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 ⑤ 자치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총학생회,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동아리연합회, 학부·과학생회, 외대교지편집위원회로 배분된다.
- ⑥ 각 단위로의 자치회비 배분율은 매학기 정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⑦ 자치회비 인상·인하·동결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89조(기부금)

- ① 기부금은 개인 또는 단체가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에게 대가 없이 증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다.
- ②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는 기부금의 결산을 공개할 의무를 진다.
- ③ 기부금이 특정 사업을 위하여 증여되었을 경우 기부금은 해당 사업의 예·결산 수입의 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는 기부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총학생회는 직전 반기에 사용한 모든 기부금 증빙자료 사본을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 회 최소 3일 전까지 본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90조(기타 수입)

- ① 기타 수입은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에서 걷는 특정 사업의 회비 및 각 단위에서 발생 하는 수익금 등 본회로 귀속되는 모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 ②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는 기타 수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는 직전 반기에 사용한 모든 기타 수입 증빙자료 사본을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 회 최소 3일 이전까지 본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절 회계

제191조(회계연도)

- ①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회기를 4분기로 구분하고 1분기와 2분기를 상반기로, 3분기와 4분기를 하반기로 구분한다.
 1. 1분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2. 2분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3. 3분기: 2학기 개강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4분기: 1월 1일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② 본회의 재정은 각 분기에 따라 집행하고 결산한다.
- ③ 각 분기당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192조(예산)

- ①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예산안은 통일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양식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② 본회의 상반기 예산안은 상반기 개시 10일 전부터 상반기 개시 후 12일 이내에 중앙운영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때 총학생회 상반기 예산안 편성권은 11월 총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가 갖는다.
- ③ 본회의 하반기 예산안은 하반기 개시 10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차기 선거 종료일까지의 예산을 편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인준을 위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 ⑤ 상·하반기 예산안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의결되지 못한 경우 예산은 일절 집행될 수 없으며 7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재소집하여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단, 제183 조(예산의 가집행과 추가경정예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예산을 가집행할 수 있다.

제193조(예산의 가집행과 추가경정예산)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산을 가집행할 수 있다.
 1.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안건이 상정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성사되지 못 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금 5,000,000원 한도 내에서 가집행 할 수 있다.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예산안을 부결하였을 경우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책정된 금액을 가집행할 수 있다.
 3. 상반기 개시 후 12일 이내에 총학생회장단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 금 3,000,000 원 한도 내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예산안이 의결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94조(결산)

- ①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결산은 통일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양식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② 결산은 각 분기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별·재원별 결산을 병행한다.
- ③ 상반기 결산은 당해 연도 하반기 중앙감사위원회에서, 하반기 결산은 차기 연도 상반기 중앙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다.

제195조(증빙자료)

- ① 결산에 대한 증빙자료는 통장 사본·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 가능한 영수증의 종류는 「재정·감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는 결산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방식은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제196조(중앙감사위원회)

- ① 본회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앙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재정·감사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위임 받은 최고 감사기구이다.
- ③ 중앙감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④ 중앙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 중 1인으로, 위원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1인으로 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 ⑤ 중앙감사위원회는 본 회칙과 「재정·감사 운영세칙」에 의하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제4절 재정 배분

제197조(원칙)

자치회비는 재정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조직과 재정운영을 자치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조직을 고려하여 각 조직의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배분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독립기구에 한하여 교비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

제198조(특별기구)

- ① 각 학기 본회의 자치회비 수입의 25%를 특별기구에 배정한다. 단, 필요에 따라 연석회의 구성원 전원 출석과 출석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통하여 배정 비율 25%를 최소 0%에서 최대 35%까지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배정 비율과 조정 사유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③ 특별기구에 배정된 금액은 특별기구 연석회의가 각 특별기구의 사업 계획서를 통하여 필요 예산의 정도를 심의·의결하여 배분한다.

제199조(독립기구)

- ① 본회의 교비지원금 총액 중 최대 금 5,000,000원을 독립기구에 배정하고 이 중 최대 금 2,500,000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금액에 따라 교비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해당 연도에 총학생회 선거를 두 번 이상 실시하게 될 경우 특별선거교비의 명목으로 최대 금 2,500,000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로 배정하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금액에 따라 교비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 독립기구장이 교비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③ 독립기구가 동일조항 제1항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단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교비지원금은 필요에 따라 자치회비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선거

제200조(총학생회장단 선거)

- 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모든 정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총학생회장 후보 및 총부학생회장 후보가 2인 1조의 피선거인단으로 입후보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전체 정회원 과반수 투표와 전체 투표수 중 최다득표를 한 피선거인을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선거의 경우 전체 정회원 30% 이상의 투표와 전체 투표 수 중 과 반수의 찬성을 득표한 피선거인을 당선자로 한다.

제201조(시기)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그 임기 개시 전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 세부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2조(선거권·피선거권)

- ① 본회의 모든 정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② 본회의 정회원으로 5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20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최고기구이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가 구성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 ⑤ 선거기간 동안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4조(보궐선거)

총학생회장단이 탄핵·사고·사퇴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잔여 임기가 230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하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05조(재선거)

제201조(시기) 제1항에 의한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무효 확정,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사망 혹은 사퇴, 당선인 부재 등의 사유로 무산될 경우 익년도 개강 후 4주차에서 6주차 사이에 재선거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6조(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대표자의 윤리

제207조(목적)

본회의 윤리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의 구성원이 본회에 도덕성과 책임 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치활동에 있어 대표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무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회와 대표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8조(대표자의 정의)

본회의 대표자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총학생회,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동아리연 합회, 학부·과 등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을 의미한다.

제209조(의무)

- ① 본회의 대표자는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회원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회원을 위한 학술 및 자치활동에 있어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지며 행실과 언행에 있어서 신뢰와 진실성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 ④ 본회의 대표자는 학술 및 자치활동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목적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제반 활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본회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⑥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선거에 있어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⑦ 본회의 대표자는 재정 관리에 있어 예·결산 공개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⑧ 본회의 대표자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시 윤리선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0조(윤리선서)

본회의 대표자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시 다음과 같은 윤리선서를 한다. “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대표자로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행실과 언행에 있어서 신뢰 와 진실성을 근본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에 있어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 여할 것이며, 평화를

향한 창조적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표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외대 학우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11조(징계)

① 본회의 대표자는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

1. 회의 1회 무단 불참할 경우 사과문 게재와 다음 회의에서 공개 사과(사과문 게재 또는 공개 사과 결정에 불응할 경우 2회 무단 불참으로 인정한다)

2. 회의 2회 무단 불참할 경우 일정 기간 자격 박탈과 자격 박탈 기간 도중 회의 의무 참관(자격 박탈이 결정된 경우 해당 회의의 재적에서도 제하며 회의 의무 참관에 불응할 경우 3회 무단 불참으로 인정한다)

3. 회의 3회 무단 불참할 경우 해당 연도 회의 구성원 자격 박탈(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자격이 박탈되면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박탈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대표자는 본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

1. 학생회 자산을 횡령할 경우 사과문 게재와 동시에 내역 공개 및 수위에 따라 징계 및 형사소송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을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자격 박탈(단, 해당 선고가 학생회의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인한 판정일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성방가·무단투기 등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실이 발견될 경우 증인·증거 확보를 바탕으로 1회 발견될 경우 사과문 게재, 2회 발견될 경우 대의원 자격 박탈

4. 제180조(대표자의 책임) 제6항에 해당할 경우 공식 사과문 게재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공개회의에서 공개 사과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회의,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동아리연합회, 학부·과 집행위원회 회의에 대한 징계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212조(사과문)

① 본 회칙, 본 회칙에 부수되는 세칙·규칙 및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에서 명시하는 모든 사과 문은 공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게재 게시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과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과문 게재 대상자 본인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이름, 학번, 직위

2. 사과문 게재 사유

3. 사과의 내용

4. 사과문 게재 일시 및 서명

③ 제1항의 사과문은 회칙 상 게재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최소 7일 이상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사과문의 게재 기한 및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과문은 반드시 전지 4·6배판(788mm × 1090mm)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회칙 제·개정

제213조(제·개정안 발의)

① 회칙 제·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② 연서에 따른 발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제·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연서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4. 대표 발의인

제214조(제·개정안 공고)

① 회칙 제·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칙 제·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제213조(제·개정안 발의)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은 총학생회가 관리하는 모든 온 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5조(제·개정안 심의)

① 제213조(제·개정안 발의)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회칙 제·개정안이 발의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 제·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회칙 제·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16조(제·개정안 의결)

① 회칙 제·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회칙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② 회칙 제·개정은 기명투표로 표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7조(회칙 정리)

① 회칙개정이 의결된 후 저촉되는 조항·오탈자·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중앙운영위 원회는 회칙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특별기구·독립기구 등 특정 기구의 신설·해소 또는 회칙의 제정·삭제가 의결되거나 이를 수 반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장·절·조·항·호·목의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재배열하고 이를 의결 한다.

제218조(공포)

① 회칙 제·개정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은 7일 이내에 공포한다.

② 회칙 제·개정의 공포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제213조(제·개정안 발의)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또는 그 명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포문은 총학생회가 관리하는 모든 온 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회칙 제·개정은 세칙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도 준용한다. 단, 세칙 제정의 공포시에는 세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며 규칙 제정의 공포시에는 제정의 근거가 되는 세칙별로 규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219조(효력)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18조(공포) 제1항에 따른 공포일을 부칙에 명시하고 부칙에 명시 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절 세칙·규칙

제220조(세칙·규칙)

① 본회는 회칙에 의하여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의하여 규칙을 제·개정한다. 단, 회칙에 근거한 규칙은 세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제·개정할 수 있다.

②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③ 특별기구와 독립기구,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동아리연합회, 학부·과 학생회의 회칙이 본 회 칙 및 본 회칙에 부수되는 세칙을 위반한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의결을 통해 해당 단위에 회칙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규칙은 세칙에 근거를 두는 규칙과 회칙에 근거를 두는 규칙으로 나뉘며 모든 규칙은 동일 한 지위를 갖는다.

제221조(세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② 세칙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한다.
- ③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2조(세칙에 부수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부재할 경우 이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②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폐지하되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의 의결로 제정·개정·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3조(회칙에 부수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회칙에 부수된 규칙(이하 일반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1. 의결기구에 관련된 사항
 - 2. 집행기구에 관련된 사항
 - 3. 특별기구에 관련된 사항
 - 4. 본회의 정기사업·비정기사업에 관련된 사항
 -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
 - 6. 독립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
 - 7. 학교시설 사용 등에 대한 회원 전체의 합의에 관련된 사항
 - 8. 학교 당국과의 합의에 관련된 사항
 - 9. 본회와 학내 각 단체 간의 합의에 관련된 사항
 - 10. 본회와 외부단체와의 합의에 관련된 사항
 - 11. 회칙의 특정 조문에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
 - 12.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일반규칙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하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로도 제정·개정·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4조(효력)

세칙·규칙 제·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과 동시에 부칙에 그 시행일시를 명시하고 부칙에 명시 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절 해석·규정집

제225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

- ①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가 해당 회칙의 해석을 주 안건으로 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련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회칙의 제·개정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회칙 제·개정 당시의 학생회칙특별위원 중 1인 이상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고인으로 초청하여 발언 또는 해당 위원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하여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본회의 중요 사항과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회칙의 해석을 위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결하면 회의의 논의 과정과 해석 내용을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세칙·규칙 및 독립기구 회칙·특별기구 회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제226조(규정집)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칙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단,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 중 제·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칙
 2.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
 3.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규칙
 4.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특별기구와 독립기구의 회칙
 5.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6.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학부·과 학생회의 회칙
 7. 편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학생회칙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내용 ②
- 제1항의 규정집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편찬·배포를 담당한다.

부 칙

〈2018. 12. 05〉 본 회칙은 2019년도 1학기 개강일부터 시행한다.

〈2020. 09. 27〉 본 회칙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2021. 03. 23〉 본 회칙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2021. 09. 06〉 본 회칙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